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3. 5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3. 5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3. 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명호)

가. 제안이유

○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·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 (물가대책회의, 2001. 1. 31)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(안 제11조제3호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감면대상 면적이 상향되는데 종토세 감면액은? ○ 결국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지?	○ 60~85㎡ 2건뿐이며 세액은 10만원 미만으로 경미합니다. ○ 임대 32평형까지입니다. 임대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관련 제442호
의결년월일	2001. 3. 14 (제85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3. 5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·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(물가 대책회의, 2001. 1. 31)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(안 제 11조제3호)

부천시조례 제 호

###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호 중 “60제곱미터”를 “85제곱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(생략)	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(현행과 같음)
1 및 2 (생략)	1 및 2 (현행과 같음)
3. 전용면적 <u>60제곱미터</u>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3으로 한다.	3. .... <u>85제곱미터</u> ..... ..... ..... .....